

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·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11호(2009.03.19),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11-143호 (2011.6.2)로 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 고시된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,

2. 지난 11.6.자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1심판결로 인해 2014.6.30.자 결정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」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해제사유 :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해산요청에 따른 구역해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제1항 및 동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해제

나. 공람·공고 개요

- 1) 공람기간 : 2014.11.27 ~ 2014.12.29 (33일간)
- 2)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54)
- 3) 공고방법 : 구보 게재 및 구청 게시판·구 홈페이지 게시

- 붙임 1.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해제 주민공람공고(안).
 2. 공람의견서. 끝.

주무관 **라전희** 뉴타운사업2담당 **황인수** 주거정비과장 **정택근** 도시환경국장 11/25
김장수

협조자 ★주무관 **김하연**

시행 주거정비과-14614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)2241-2854 / 전송 02)2241-6545 / gio0515@sb.go.kr / 대시민공개